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년 8월 pp. 155~182

논문접수일 2006.08.03
논문심사일 2006.08.04
심사완료일 2006.08.24

중국 반덤핑 사실과 절차에 관한 考察

趙宗柱*

-
- I. 서론
 - II. 반덤핑의 법적 기반과 조사기관
 - III. 개정 반덤핑조례의 주요내용
 - IV. 반덤핑 조치의 발동요건과 조사절차
 - V. 반덤핑조치
 - VI. 결론
-

I. 서론

중국은 1997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시행하였고, WTO의 반덤핑 협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에 개정하였으나 2004년 3월에 다시 개정된 반덤핑조례를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반덤핑조례에 따라 중국은 2005년 말까지 총 42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에 대한 제소건수는 27건으로 중국 전체 반덤핑 제소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 반덤핑 규제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한 27건의 반덤핑 제소 건중 무혐의(2건), 조사중단(1건), 조사철회(1건)를 제외한 23건이 현재 규제(18건)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5건)이다.¹⁾

중국 반덤핑 제도의 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昌原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助教授.

1)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추이

첫째, WTO 가입 후 반덤핑 조사 역량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덤핑 조례가 실시된 1997년부터 2001년 WTO 가입 이전까지는 반덤핑 제소가 12건에 불과했으나 WTO 가입 이후 2005년 말 현재까지 4년간 제소건수가 3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대량 제소 건을 통해 중국의 반덤핑 조사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반덤핑 제소가 중국의 주요 무역정책으로서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제소 대상 품목이 주로 석유화학(한국은 중국의 총 30건중 18건), 철강(총 3건중 2건), 섬유(총 3건중 3건), 제지(총 4건중 3건) 등 원자재 성격의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국가는 주로 중국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한국, 일본(26건), 대만(10건) 등 인접국에 집중되어 있고 흑자국인 미국(21건), 독일(12건)이다.

이처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반덤핑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반덤핑제도 운용 시 정책당국의 의지나 재량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덤핑제소는 조사 개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앞으로도 반덤핑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5년 들어 한중간 통상마찰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점증하는 대중국 무역흑자와 철강 및 석유화학 등에서의 시장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한·중간 통상환경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정 반덤핑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기술하고, 반덤핑의 사실과 조사절차, 그리고 반덤핑조치를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중국의 반덤핑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한다.

구 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제소 건수	1	4	1	6	9	6	8	7
한국 피소 건수	1	2	1	5	8	3	5	2
비 증(%)	100.0	50.0	100.0	83.3	88.9	50.0	62.5	28.6

자료 : 한국무역협회(심윤수, 중국반덤핑 제소동향 조망 및 대응방안,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06. 4, p. 7.).

II. 반덤핑의 법적 기반과 조사기관

1. 법적기반

1) 중국 대외무역법

중국의 대외무역법규체계는 무역에 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 있고, 대외무역법 밑에 하위시행령으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치조례와 지적재산권이나 반독점에 관한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에 있어서 반덤핑관련 규정은 제7장 대외무역조사(제37조-제39조)와 제8장 대외무역구제(제40조-제50조) 조항에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및 반조조금조례가 1997년 3월 25일에 제정되고, 2001년과 2004년 3월 31일에 반덤핑조례가 개정되었다.

2) 중국 반덤핑조례와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97년 3월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에 WTO에 가입하면서 이 조례를 WTO 규정에 입각하여 수정하면서 반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고, 반덤핑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반덤핑조례의 하위규정으로 덤프ing 조사에 관한 규정과 덤프ing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규정²⁾을 2002년 4월에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반덤핑조례는 2003월 25일에 상무부가 정식으로 신설되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공공이익과 관련된 조항의 삽입, 반

2) 반덤핑조사에는 반덤핑조사입안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조사 표본추출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 질문서 조사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조사 공청회 잠정규정, 반덤핑조사 현지실사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조사 정보공시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조사 공개 정보열람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 가격약속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세의 환급에 관한 잠정규정, 덤프ing 및 덤프ing 마진의 연례재심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 신규수출자 재심에 관한 잠정규정, 반덤핑 제품범위 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정 등이 있고, 반덤핑피해조사에는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이 있다(이장완, 중국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검토, 무역구제 2004(가을호), 무역위원회, 2004. 10, p.136).

덤핑세의 소급부과를 위한 등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GATT 제4조의 실시에 관한 규정(WTO 규정)

중국은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GATT 제4조에 구속되고 있고, 또한 GATT 제4조는 무역분야에 있어서 확립된 국제관행이기 때문에 덤핑조사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WTO 규정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넓다고 할 수 있다.

2. 반덤핑조사기관

중국 반덤핑조례에는 반덤핑조사와 조치의 실시에 있어서 세 개의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즉 상무부, 해관총서(세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다.

1) 상무부

1997년 중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조례에 있어서 덤핑의 조사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가, 손해의 조사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경무위)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덤핑 및 손해의 조사를 모두 상무부³⁾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 내에서 덤핑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수출입공평무역국이고,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산업피해조사국이다. 수출입공평무역국은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고의 공포를 하는 대외적인 창구이며, 주요한 기능은 안건의 수리, 수입의 조사대상제품에 대한 덤핑 및 덤핑마진의 조사, 계산 및 결정,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대한 대응, 공청회 및 자료공시회의 개최, 조사대상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 또는 수출국정부와 협의 및 가격약속의 체결, 반덤핑세 징수의 제안, 각종 공고, 및 통지의 대외적인 공포, 행정재심사 및 신수출자의 재심사

3) 상무부는 2003년 3월 6일 중국 전인대 결정에 의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통합하여 3월 25일부로 정식 신설되었다.

등이다. 산업피해조사국은 주로 손해관련 조사를 하는데, 주된 기능은 국내산업의 손해 및 손해의 정도에 관한 조사 및 결정,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대한 대응, 손해조상의 공청회개최 등이다. 농산물과 관련된 국내산업 손해조사는 상무부가 농림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관세세칙위원회는 구체적인 덤픽조사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상무부의 제안을 받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 ① 임시 및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②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수정 또는 종결할 것인지의 여부. ③ 덤픽마진을 초과한다면 신청된 반덤핑관세로 실제로 징수할 것인지의 여부. ④ 확정된 반덤핑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이다.⁴⁾

3) 해관총서

세관총서의 임무는 덤픽에 관하여 조사하는데 있어서 상무부와 협력하고, 반덤핑 판정결과에 따라 덤픽조치의 집행을 책임을 진다.

III. 개정 반덤핑의 주요내용

1. 가격약속후 조사계속의 의무화

조사당국은 반덤핑의 존재가 확인된 예비판정후에 “수출업자가 행한 가격약속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1년 반덤핑조례 제33조 1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의 개정에서는 “수출업자가 행한 가격약속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수출업자가 조사의 계속을 청구하

4) 寧宣鳳,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法制およびその運用, 國際商事法務 Vol. 29. No. 3, 2001, p.311.

거나 또는 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덤핑 및 손해에 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출업자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고 조사결과 덤핑 또는 덤핑에 의한 손해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가격약속은 소멸한다”고 수정되었다. 이 내용은 WTO 협정(WTO의 1994년 GATT 제6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 제8조 4항에 “가격약속이 승인되면 덤핑 및 피해의 조사는 수출업자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권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응하여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수출업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조사계속을 조사당국의 의무로서 명확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WTO 협정의 해당 문언은 조사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도 조사당국에게 의무로 지운다고 하는 문언으로 해석되지만, 그 경우에는 어느 것이라도 조사계속의 필요성을 조사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사계속을 할지의 여부도 조사당국의 재량판단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

한편 2004년 반덤핑조례 제34조 2항에서는 “덤핑 또는 피해의 부정판결을 내릴 경우에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으며, ‘덤핑과 피해’의 긍정판정을 내릴 경우에 가격약속은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여기서 2001년 반덤핑조례에서는 ‘덤핑 또는 피해’라고 규정된 것을 ‘덤핑과 피해’로 수정하여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가격약속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덤핑 긍정, 피해 긍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공공이익 문언 추가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과 손해가 입증되고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WTO 반덤핑협정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EU에서는 덤핑 및 손해가 긍정적일지라도 공동체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⁶⁾

5) 曾我貴志, 中國アンチダンピング條例の改訂, 國際商事法務 Vol. 32 No. 5, 2004, pp.628-630.

6) EU의 반덤핑규칙에서는 잡정반덤핑관세 및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있어서 덤핑 및 손해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세의 부과가 공동체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국내산업과 사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의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취합된 모든 다양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공정거래, 고용유지, 투자보호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비자나 중간 사용자측에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 수입이 억제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후생이 저하되게 된다. 그러므로 반덤핑조치의 판정시에 국내산업의 이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국내수입상, 중간사용자인 기업들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공이익의 취지이다.⁷⁾

중국은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심하고 세계중저가 제품의 생산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반덤핑조례 제33조에서는 조사당국이 수출경영자의 가격약속을 받아들여 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때의 요건으로서, 조사당국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37조에 있어서도 덤피ング의 부과는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이를 조항의 문맥에 있어서 각각 가격약속 승인과 덤피ング부과를 위해서는 사회공공 내지 중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97년 반덤핑조례에서 공공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국내산업의 피해 판정시에 이를 고려하였다. 즉, 2000년 한국·일본산 스테인레스틸 강판 사건⁸⁾의 최종판정에서 강판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규격과 용도의 제품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사당국은 일본과 한국의 가격약속합의서에서 “가격약속이 중국의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되지 않으면 가격약속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익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EU는 제소측, 수입자 이외에 대표성 있는 사용자, 소비자단체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gulation 384/96, Art. 7(1), 9(4), 21, Regulation 2423/88, Art. 11(1), 12(1)).

- 7)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 개정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2004(봄호), 무역위원회, 2004. 4, pp.127-128.
- 8) 이 사건은 1999년 6월 17일에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4월에 예비판정, 2000년 12월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한국기업들은 4%-6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당하였다 (이건호 등, 중국 반덤핑제도의 고찰과 향후 전망, 무역구제 2001(가을호), 무역위원회, 2001, p.8)

3. 소급조치 확보를 위한 수입등기 등의 조치 허용

2004년 중국 반덤핑조례 제44조에는 ① 덤픽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손해를 미친 덤피경력이 있거나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덤피 및 덤피으로 인하여 야기된 국내산업의 손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및 ② 단기간에 조사상품이 대량 수입되어 곧 실시될 덤피세의 보전효과를 크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임시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기 전 90일 동안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무부는 상기 2요건이 모두 해당함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급조치가 행하여지기 위하여 조사상품에 대하여 '수입등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⁹⁾고 규정되었다. 소급조치는 덤피조치(정확하게는 예비판정에 의한 잠정덤피조치)가 발동된 직전에 대량으로 수출을 행하는 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조사당국에 인정된 대응책이지만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상품을 추적하여 소급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관실무상 어렵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예비판정전의 단계에서 덤피조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등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소급조치를 이용하는 경로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의 취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등기 등의 보전조치가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세관당국과의 협조가 있고, 그를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으로부터 소급조치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신청자인 중국 국내산업이 먼저 수입을 저지하고자 생각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또는 기타 진정을 하는 등에 의해 소급조치가 활용되도록 계기를 부여해준다고 볼 수 있다.

9) '수입등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2004년 반덤핑조례에 새로이 추가된 규정이다.

IV.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과 조사절차

덤핑방지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덤픽사실이 있고, 그 덤픽에 의해 손해가 존재하며, 덤픽사실과 손해사이에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덤픽사실을 확인하며, 그 덤픽에 의한 손해를 확정하고 덤픽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덤픽조사절차를 검토한다.

1.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1) 덤픽사실의 확인

(1) 덤픽사실의 존재

중국 반덤핑조례에 있어서 “덤픽”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중국으로의 수입제품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그 차액을 ‘덤픽의 폭’(덤픽마진)이라 한다(제6조). ‘수출가격’(Price)은 실무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지만 ‘정상가격’(Value)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인가를 확정하고,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덤픽사실의 존재와 폭은 정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및 그 가격 사이의 공정한 비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정상가격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제4조). ① 수출국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과의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가격(수출국 시장의 비교가능 국내 가격), ② 수출국시장에서 수출되는 제품과 동종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제품의 가격 및 수량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동종

제품이 적당한 제3국에 수출되는 비교가능가격(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 ③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의 해당 제품의 생산원가, 합리적인 비용 및 이익에 의해서 산정되는 가격(구성가격)이 각각 정상가격으로 이용된다.

① 수출국시장의 비교가능 국내가격

수출국시장의 비교가능 국내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내가격이란 수출국에서 유사상품의 국내판매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은 정상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한 설득력이 있고, 유효한 방법이다.¹⁰⁾

② 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 및 구성가격

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은 수출국이 적절한 제3국에 판매한 동종제품의 가격을 말하며, 구성가격은 원산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관리·판매·일반 비용 및 이윤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본조례에서는 이 두가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수출국의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국내가격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국내가격이 없다고 하는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국 상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WTO 반덤핑협정 제2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 상거래에서 동종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시장이 특수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국내판매가 수입국으로의 판매의 5% 미만인 경우) 적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또는 제3국으로의 판매가 단위당 생산비에 관리비, 판매비용 및 일반적인 비용을 합한 것 미만이고, 동시에 그러한 판매가 장기간(통상 1년,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이다.

반덤핑조례에서 구성가격은 생산원가, 합리적인 비용 및 이익으로 구성된다(제4조 2항). 여기에서 합리적인 비용의 고려요소로는 제품의 단위생산원가,

10) 상무부가 덤프링을 인정할 경우에 상무부는 조사개시에 앞선 1회계연도의 가격을 필요로 한다. 상무부는 모든 피신청자에게 그 기간중의 국내판매가격을 회답할 수 있도록 질문서에 작성한다. 그리고 상무부는 조사대상년을 포함한 과거 3년간에 걸쳐서 기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의 대표적인 거래가격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신청자가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별 거래가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입수가능한 정보'가 적용될 가능성성이 높다.(寧宣鳳, 전계논문, p.313.)

판매비용, 관리비용, 일반비용 및 재무비용과 이윤 등이다.¹¹⁾ 미국에서는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면 합리적인가에 관하여 통상 일반경비는 생산원가의 10% 이상, 이익은 생산원가와 일반경비의 합계의 8% 이상이라고 하한을 두고 있다.

③ 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과 구성가격과의 우선순위

수출국시장의 비교가능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과 구성가격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중국 반덤핑조례와 WTO 덤핑방지협정에도 언급이 없다. 국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위하다. 미국의 덤핑방지의 실무에서는 비교가능 제3국 수출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구성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 EU의 덤핑방지의 실무에 있어서는 제3국 수출가격이 덤핑될 가능성으로 구성가격의 채용을 우선하고 있다.¹²⁾

④ 제3국의 선정

제3국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채용되는 경우 이 제3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는 해당 제3국의 선정에 관하여 다음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즉, 해당 제3국으로의 수출제품과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의 유사성, 해당 제3국에서의 판매수법과 중국에서의 판매수법의 유사성, 대상제품의 수출된 수량에 관하여 해당 제3국이 가장 많은가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수량이 중국으로의 수출수량의 5%이하로 되지 않는가 등이다.

나. 수출가격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출가격으로 본다(제5조 1항). 한편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데이터가 없거나 그 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제품이 중국내에서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 즉 수출업자가 중국의 자회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그 자회사 수출가격을 무시하고, 중국자회사가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해당 수입제품이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11) 김여선, 한중간 반덤핑규제에 관한 연구, 통상별률, 법무부, 2001. 6, p.6

12) 姫軍,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防止條例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 25, No. 6, 國際商事法務研究所, 1997, p.628.

않았거나 수입 당시의 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상무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확정할 수 있다(제5조 2항).

다. 덤핑의 폭

덤핑의 폭은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가격차이다(제6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확정할 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교가능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하여야 한다(제6조 2항). 여기에서 “각종 비교가능한 요인”은 WTO 덤핑방지 협정에 따라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2.4조)한다고 본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WTO 덤핑방지협정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에 관하여 상거래에 동일한 단계, 가능한 한 동일 시점에 가격비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조). 통상 공장인도의 단계에서 가격비교가 이루어진다.¹³⁾

2) 손해의 확정

반덤핑조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덤핑수입품의 존재가 입증되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의 결정은 덤핑과 함께 반덤핑조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요건이며 절차이다.¹⁴⁾

(1) 손해의 정의

반덤핑조례나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¹⁵⁾은 “손해”란 “덤핑이 국내에 이미 성립된 관련 산업에 초래한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 관련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¹⁶⁾라고 규정

13) 姬軍, 전개논문, p.629.

14) 이승영, 전개논문, p.111.

15) 반덤핑조례 제7조,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4조.

16)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손해, 위협, 장애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무역위원회에서

함으로써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반덤핑협정 제3조 각주 9)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에는 손해의 종류별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손해(實質損害, material injury)”는 국내산업에 이미 발생한 경시 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實質損害威脅, threat of material injury)”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고 긴박한 상황을 말한다.

“실질적인 장애(實質障礙, material retardation of establishment)”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 손해의 우려는 초래하지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커다란 피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을 말한다.

실질적인 손해와 실질적인 손해의 우려의 중요한 기준은 손해가 이미 국내산업에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다. 해당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해당기업의 판매대장이나 손익대장에 분명히 반영되게 된다. 이점이 실질적인 손해와 실질적인 손해의 우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¹⁷⁾

(2) 손해, 손해의 위협 및 실질적인 장애의 심사기준

가. 실질적인 손해의 심사기준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 있어서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¹⁸⁾에는 ① 덤픽물품의 수입물량 및 덤픽 수입물품이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② 국내산업에 대한 덤픽수입물품의 영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WTO 반덤핑협정 제3.1조¹⁹⁾를 수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부문은 명기

는 피해, 우려, 자연으로 정의하고 있다.

17) 國家經貿委反傾銷反補貼辦公室編, 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知識讀本, 中國經濟出版社, 2001, p. 31.

18)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 제5조

19) 반덤핑협정 제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수입물량 및 덤픽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하고 있지 않다.

나. 실질적인 손해 위협의 심사기준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중국의 반덤핑조례 제8조에서는 “실질적 피해 위협 여부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다만 고발, 추측 또는 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손해조사규정²⁰⁾은 반덤핑협정²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 우려는 예견 가능성과 급박한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또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우려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지 고발이나 추측 혹은 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실질적인 피해 우려를 확정함에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되 이에 한정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반덤핑협정의 “이런 요소 중 어느 하나도 반드시 결정적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된다.

- ① 덤픽제품수입의 실질적인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현저한 수입 증가율
- ② 수출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증가의 능력이 있어 수입회원국 시장으로 덤픽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20) 제8조

21) 반덤핑협정 제3.7조.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덤픽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시장에로의 덤픽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ii)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픽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iii)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iv)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덤픽수출품이 추가로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성이 있는가 여부. 이러한 요소를 채택하는 경우 기타 수출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물품가격을 대폭 하락 혹은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는지 여부와 수입물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 여부

④ 조사대상 제품의 재고 현황

다.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장애의 심사기준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장애”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의 우려는 초래하지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은 반덤핑협정이나 각국의 반덤핑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례도 드문 실정이다.

산업피해조사규정 제9조는 덤피ング이 국내산업 확립에 끼친 실질적인 장애를 확정할 때에, 실질적 피해 우려시 고려되는 위의 4가지 요소와 함께 ① 국내산업의 확립과 건설계획 상황, ②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③ 덤피ング 수입제품의 국내시장상황에 대한 영향, ④ 덤피ング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등을 심사하되 이를 요소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량의 신홍산업과 유치산업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산업은 사업계획 단계에 있거나 아직 건립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조정과 국영기업 개혁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외국상품이 대량 덤피ング 수입될 경우, 이러한 국내산업은 실질적 손해의 우려 또는 확립의 실질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이다.²²⁾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에 대한 법적 보완은 앞으로 신홍산업과 유치산업의 보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²³⁾

라. 손해의 누적평가

반덤핑협정은 산업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누적하여 산업피해판정을 할

22) 宋和平, 反傾銷法律制度概論, 中國檢察出版社, 北京, 2001, p. 67.

23) 이승영, 전개논문, pp.118-119.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반덤핑조례의 누적평가 규정²⁴⁾은 반덤핑협정²⁵⁾의 관련 조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덤핑조례에는 덤피ング수입제품이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되고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①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피ング이 최소허용수준(2%)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②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적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시할 만한 수준은 한 국가(지역)로부터의 덤피ング 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 총 수입물량의 3%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3%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지역)들의 총 수입물량이 동종제품 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들 조건 중 ①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조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②의 경우는 그 적용기준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조사당국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²⁶⁾

또한, 누적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피해조사규정²⁷⁾은 반덤핑조례와 반덤핑협정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누적평가 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요인을 열거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①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피ング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지속성과 가능성
- ②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피ング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대체가능정도, 특정 고객의 요구 또는 제품품질 등 관련요인
- ③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피ング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의 동일지역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판매자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
- ④ 다른 국가(지구)에서 들어온 덤피ング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매경로를 가지는가 여부, 시장에 동시에 출시하였는지 여부
- ⑤ 덤피ング수입 제품 간 또는 덤피ング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24) 반덤핑조례 제9조.

25) WTO 반덤핑협정 제3조 3항.

26) 이승영, 전개논문, p.120.

27) 중국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15-16조.

⑥ 기타요인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덤핑으로 제소된 경우 중국 조사당국은 피해 판정에서 누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국내산업의 범위

반덤핑조치 요건은 최소한 덤핑률 2% 이상의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덤핑수입사실이 있더라도 덤핑이 수입국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면 반덤핑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덤핑수입품에 의한 수입국 국내산업의 손해 여부를 결정하려면 덤핑수입물품과 경쟁하는 동종물품 및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가. 동종물품

조사대상인 덤핑물품과 동종 물품인지 여부는 덤핑조사, 손해 결정, 덤핑 확정 후 반덤핑조치 부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동종물품이 덤핑의 결정에서 국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의 갖는 의미를 들 수 있다. 즉,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내의 비교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국내생산품의 존재와 조사 대상의 범위, 피해 분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세 번째로는 반덤핑조치의 부과 대상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이다.²⁸⁾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에서는 “동종물품”을 동일한 물품(identical product)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중에 있는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조례와 산업피해조사규정²⁹⁾도 반덤핑협정의 정의를 그대로 일치시키고 있다. 동종물품을 확정함에 있어, 산업피해조사규정은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성질, 생산설비와 기술·제품용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제품

28) Johann Human, Anti-Dumping, WTO AD Workshop Seoul-Dec2002, slide 9(무역위원회 : 반덤핑 교육자료, 2002.12. p. 12.)

29) 반덤핑조례 제12조, 산업피해조사규정 제10조.

의 대체가능성, 판매경로, 가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조사개시규칙 제14조는 신청인에게 신청 대상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 물품에 대한 설명 및 2가지 제품간의 비교에 관하여 상세한 증거자료³¹⁾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국내산업의 범위

국내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중국의 반덤핑조례(제11조)는 반덤핑협정(제4조 제1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국내산업”은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중국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제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가르킨다. 그러나 국내 생산자가 덤픽으로 주장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제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반덤핑협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련(關聯, Related)’에 대해 산업피해조사규정은 다음 3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즉, “관련이 있다”는 그들 중 ①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거나, ②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거나, ③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³²⁾ 단, 이 경우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이들 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이 된다.³³⁾

국내산업은 덤픽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 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생산자는 덤픽수입물품과 동종물품만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0) 산업피해조사규정 제11조.

31) ①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 상황, 중국 관세세칙 일련번호(HS Code) 등 포함, ②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원산국(지역) 또는 수출국(지역), ③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 상황 등 포함, ④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 제품의 차이점 및 공통점 비교. 제품의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질, 생산 가공 공정, 대체성, 가격, 용도 등에 대한 비교 포함 등을 신청인은 제출하여야 한다.

32) 산업피해조사규정 제13조 제2항,

33) 반덤핑협정 주11.

3) 덤픽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반덤핑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덤픽물품의 수입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양자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입증되어야 한다. 반덤핑협정 제3조 5항에서는 “덤픽 수입품이 덤픽의 효과를 통하여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픽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픽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덤픽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덤픽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미친 손해를 확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덤픽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덤픽으로 인한 것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라고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덤픽 이외의 다른 요인”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반덤핑협정에서는 “이것과 관련 될 수 있는 요인에는 특히, 덤픽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생산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일반적 인과관계, 주요 인과관계, 비인과관계의 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 인과관계는 덤픽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주요 인과관계란 이미 살펴본 손해 조사 판정시 고려하는 덤픽수입품의 가격 및 수량의 영향, 국내 산업의 관련 경제 요인과 경영지표 등³⁴⁾에 대한 영향과의 관계이다. 셋째는 앞에서 열거한 덤픽

34) 반덤핑협정 제3조 4항: 덤픽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픽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중국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7조).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손해를 인과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이다.³⁵⁾ 중국은 실무적으로 3가지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내용을 예비판정문과 최종판정문에 기술하고 있다.³⁶⁾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간 인과관계는 모든 관련증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며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와 비교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2. 반덤핑조사절차

반덤핑조사절차는 덤피ング으로 피해를 입음으로써 덤피ング을 제소하여 최종판정에 이르러 덤피ング방지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1) 조사개시와 공고

덤피ン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법인·관련 조직이 조사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한다. 상무부는 제소장을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여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안조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상무부는 덤피ング조사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덤피ング과 손해가 존재하고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무부는 입안조사의 결정을 공고하며, 신청인·알려진 수출 경영업체·수입 경영업체·수출국가(지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및 개인(이하 “이해당사자”로 약칭)에 통지한다. 입안조사 결정이 공고되면 상무부는 신청서를 기재된 수출업체와 수출국가(지역) 정부에 공고사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자격

35) 國家經貿委反傾銷反補貼辦公室編, 전계서, pp. 35-36.

36) 이승영, 전계논문, p.122.

덤핑방지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①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모든 생산자들, ② 중국내 동종물품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들, ③ 생산량의 합계가 그 동종물품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조사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 생산자들(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총생산량의 25%이하일 경우 조사개시 못함)로 한다.³⁷⁾

(2) 신청제출자료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① 성명, 주소 및 신청인관련 정보, ②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설명. 물품명, 수출국가(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알려진 수출자나 생산자 신원, 수출국가(지역) 국내시장에서의 소비를 위한 물품의 가격정보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 그리고 수출가격 정보 등 ③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기술, ④ 조사대상 수입물품의 수입 및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⑤ 그외 신청자가 제출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① 조사대상 수입물품의 덤프инг사실, ②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③ 덤프инг과 손해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3) 공고사항

조사개시 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조사개시결정과 조사기간
- ② 조사대상물품과 그 범위
- ③ 응답을 위한 조사당국에의 등록
- ④ 무응답
- ⑤ 이해관계인의 권리
- ⑥ 조사 방법
- ⑦ 조사기간

37) 반덤핑조례 제17조.

⑧ 조사당국 연락처 [공평무역국(BOFT) 및 산업피해조사국(BIII)]

2)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손해·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예비판정에서 덤핑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임시 반덤핑 세금의 징수하거나 ②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물 제공(임시 반덤핑 세금 또는 보증금·보증서·기타 담보물 금액은 예비덤핑 판정에서 확정한 덤핑 폭을 초과할 수 없음)을 받는 등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덤핑세는 상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가 결정하며, 보증금·보증서·기타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무부가 결정하여 공고한다. 임시 반덤핑 조치는 반덤핑 입안조사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할 수 있으며, 임시 반덤핑 조치의 실시기한은 임시 반덤핑 조치 결정이 공고 시행되는 날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상무부는 덤핑, 덤픽폭, 손해 및 손해정도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 이전에, 상무부는 알려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종판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반덤핑조사는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공고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최종판정에서 덤핑과 덤픽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한 제안은 상무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제안에 의거하여 '국가관세세칙위원회'(State Council Tariff Commission)가 부과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상무부는 공고한다. 관세청은 공고에 명시된 유효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3) 조사의 종료 또는 중단

덤핑조사는 ①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② 덤픽·손해·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덤픽 폭이 2% 미만인 경우, ④ 덤픽 수입제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입량이나 손해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경우, ⑤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1개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조사 대상제품이 앞 조항 제②항·제③항·제④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덤픽제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는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제거할 취지를 제출하고, 중국조사당국이 이것에 동의하면 조사절차는 중단한다. 이 유효한 조치는 정해진 기간내에 중국으로의 수출의 감소 또는 정지, 덤픽폭을 낮추는 가격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재심

반덤핑관세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상무부는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의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재심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관련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출된 관련증거들에 대한 검사를 기초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가격약속을 한 경우 상무부는 가격약속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재심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상무부는 재심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반덤핑관세의 유지·개정, 또는 종료에 관한 제안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에 관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는 가격약속의 유지, 개정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을 하여 공고한다.

재심사기한은 재심사 결정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V. 반덤핑조치

중국의 반덤핑조치는 임시반덤핑조치 및 반덤핑세이다. 어느 경우에도 반덤핑조치를 받는 당사자는 중국에서의 덤픽제품의 수입자이다.

1. 임시반덤핑조치

임시반덤핑조치는 예비판정으로 덤픽 및 덤픽에 의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최종판정을 기다리다가는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취하는 규제조치이다. 내용적으로는 예비판정으로 판단된 덤픽폭에 상당하는 액의 임시 반덤핑세를 부과하든가 또는 수입자에게 보증서 및 기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임시반덤핑세의 기한은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최종판정까지 4개월부터 특수상황이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30조).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반덤핑 세금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 세금 또는 담보물의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정수하지 않는다. 반덤핑세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임시 반덤핑세 또는 담보물의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환하거나 세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제43조).

2. 반덤핑세

반덤핑세는 최종판정에서 덤픽 및 덤픽에 의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수입자에게 취하는 조치이며, 최종판정에서 판단된 덤픽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된다. 반덤핑세의 납세의무자는 덤픽수입제품을 수입하는 경영업체이며, 반덤핑세의 정수기간은 5년이다(제48조).

최종 판정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확정되고 최종 판정 이전에 이미 임시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부과하는 반덤핑세는 임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기간까지 소급하여 정수할 수 있다(제43조).

또한 임시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기 전 90일 동안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도 ① 덤픽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미친 덤픽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경영업체가 수출 경영업체의 덤픽 및 덤픽으로 인하여 야기될 국내산업의 손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② 덤픽 수입제품이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곧 실시될 반덤핑세의 보전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반덤핑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악질적인 덤픽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세금의 소급 적용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징수한 임시 반덤핑 세금 및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으로 제공된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은 해제하여야 한다(제45조).

3. 수출자의 가격약속

가격약속이란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조사중인 물품에 대한 덤픽가격으로의 수출중지를 자발적으로 상무부에 제안하고, 상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조사를 연기하거나 종결하는 약속을 말한다.³⁸⁾

덤픽 수입제품의 수출자는 반덤핑 조사 기간 중에 상무부에 가격의 조정 또는 덤픽 수출을 중지한다는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을 제안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제31조). 수출자의 가격약속을 받아들일 만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상무부가 인정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를 잠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임시 반덤핑 조치 또는 반덤핑 세금 징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은 상무부에 의하여 공고된다(제33조).

또한 덤픽 조사를 중단 또는 종료한 후에도 수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덤픽 및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덤픽 및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38) 김기준, 중국 반덤핑조사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 무역구제 2005(봄호), 무역위원회, 2005, p.139.

따라 덤핑 또는 덤핑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정된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덤핑 또는 덤핑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궁정으로 판정된 경우 가격약속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가격약속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반덤핑 안건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은 그대로 진행된다(제32조). 가격약속은 상무부가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도되거나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

VII. 결론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세계의 공장 및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계속 확대되어 우리의 최대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한국과의 교역이 개시된 이후 중국은 계속 무역수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5년 말에는 417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 무역적자의 53.6%를 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 산업간 경합분야가 증가되고 있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덤핑 등과 같은 통상마찰을 제기할 가능성성이 많다.

따라서 교역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제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① 무역관련기관의 중국관련정보의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 무역관련 기관에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동향 및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규제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반덤핑제소가 발생하면 통상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조사절차, 답변서 작성방법, 대응논리 개발 등을 상담·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변호사 알선 및 고용비용 일부 지원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제소업체간의 긴밀한 협의 및 차별화된 제품수출: 해당업체에서는 반덤

평조사가 예상되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관련업계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양국이 서로 보완적인 무역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부가가치부문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제소업체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와의 협력: 업계측에서는 중국에서 반덤핑제소를 당하는 경우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조사당국의 덤피ング죄종 판정 결과가 궁정으로 판정되고 높은 덤피ング 마진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의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参考文献

- 중국 반덤핑조례(2004)
- 중국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2002)
- WTO 반덤핑협정
- 國家經貿委反傾銷反補貼辦公室編, 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知識讀本, 中國經濟出版社, 2001.
- 김기준, 중국 반덤핑조사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 무역구제 2005(봄호), 무역위원회, 2005.
- 김여선, 한중간 반덤핑규제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법무부, 2001. 6.
- 寧宣鳳,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法制およびその運用, 國際商事法務 Vol. 29. No. 3, 2001.
- 宋和平, 反傾銷法律制度概論, 中國檢察出版社, 北京, 2001.
- 심윤수, 중국반덤핑 제소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무역구제, 무역위원회, 2006. 4.
- 이건호 등, 중국 반덤핑제도의 고찰과 향후 전망, 무역구제 2001(가을호), 무역위원회, 2001.
- 이승영, 중국의 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연구 - 개정반덤핑산업피개조사규정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2004(봄호), 무역위원회, 2004. 4.
- 이장완, 중국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검토, 무역구제 2004(가을호), 무역위원회, 2004. 10.
- 曾我貴志, 中國アンチダンピング條例の改訂, 國際商事法務 Vol. 32 No. 5, 2004.
- 姬軍, 中國におけるアンチダンピング防止條例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 25, No. 6, 國際商事法務研究所, 1997.
- Johann Human, Anti-Dumping, WTO AD Workshop Seoul-Dec2002, slide 9(무역위원회 : 반덤핑교육자료, 2002. 12. 12.).

ABSTRACT

A study on the fact and procedure of Anti-Dumping of China

Jo, Jong Ju

Recently, the anti-dumping actions of China are becoming aggressive, resulting in the speculation that Korea's trade surplus to China will be reduced. Anti-Dumping Ac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are also becoming harsh.

According to KOTRA, 18 anti-dumping actions were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against Korean produc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opened two additional cases of dumping investigations again Korean products 2005 as well. Therefore, Korea will likely face more trade restrictions in the form of anti-dumping in China

Accordingly, the Accused party need to understand Anti-Dumping Act of China. The trade related authorities are monitoring on the China related information, and builds system barring Anti-Dumping Actions. Also, companies strongly export the differential products to the China.

Key Words : Anti-Dumping